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방학 중 개관 운영 지침

(2016.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제2조제4항에 따라 학생생활관(분관) 방학 중 개관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공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생활관(분관)(이하 '생활관(분관)'이라 한다) 방학 중 개관은 본 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하계와 동계 방학 중 실시하며, 개관기간은 학생생활관(분관)장(이하 '생활관(분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입실신청 대상) 생활관(분관) 입실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 대학교 재학생
2.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계절학기 수강 신청자
3.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
4.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입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실허가) 생활관(분관) 입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단체 프로그램 운영 부서의 경우에는 입실신청 공문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1.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계절학기(교육대학원 출석수업 포함) 수강 신청자
2. 방학 중 장기이용 신청자
3.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

제5조(선발 시기)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 시기는 방학 중 개관 전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학 중 개관 후에도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입실대상자 선발)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우선입실대상자(장애인, 외국인) 선발
2. 컴퓨터 추첨 선발

제7조(입실제한) 생활관(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칙 또는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입실제한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공동체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입실기간) 입실대상자별 입실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이용 기간
2.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계절학기(교육대학원 출석수업 포함) 수업 기간
3.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제9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는 정해진 납부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생활관 이용인원 및 기간이 유동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관비 환불) 방학 중 생활관비의 환불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상적 경비 지급) ① 생활관(분관)장은 방학 중 개관 운영에 따른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적 경비 지급 기준은 해당 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6.12.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학년도 동계 방학 중 생활관(분관) 운영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대상자 선발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특별개관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별 표 방학 중 생활관비 환불 기준

1. 입실대상자가 납부한 방학 중 생활관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가. 지정된 입실일 1일전까지 입실 취소 시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한다.
 나. 생활관비 과오납 시 과오납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다. 지정된 입실일 이후 입실 취소 시 생활관비 환불 기준표

개관기간	식비	관리비
1/3선 이전	잔여일수에서 3일분 공제 후 환불	잔여일수의 1/3 공제 후 환불
1/3선 초과 2/3선 이전		잔여일수의 1/2 공제 후 환불
2/3선 초과	환불 불가	환불 불가

2.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결식기간 동안의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가.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대회참가, 합숙훈련, 교육실습, 인턴쉽, 학회, 봉사활동, 학과 졸업여행 및 MT 등)으로 연속하여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단, 교내수업수강 및 조기종강 제외>
 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의 사유로 연속하여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다.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에 의한 사유로 연속하여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3. 결식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결식일 3일 전까지 정해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과 경조사로 인한 결식일 경우 결식일 3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다.